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7. (위영란 의원 등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위영란 의원)

가. 제안사유

-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에서 “두 자녀” 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화성시 시민의 삶의 질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표 2의 연번 14의 감면대상자란 중 “다자녀가정” 을 “두 자녀 이상 가정” 으로 함(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에서 “두 자녀” 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감면대상자란 중 “다자녀가정” 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7. (위영란 의원 등 5명)
-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위영란 의원)

가. 제안사유

-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에서 “두 자녀” 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화성시 시민의 삶의 질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기준을 “세 자녀” 에서 “두 자녀” 로 변경함(별지 2)
- 한부모가족 및 모범납세자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의 기준을 마련함(별지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 가. 본 안건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에서 “두 자녀” 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기준을 “세 자녀” 에서 “두 자녀” 로 변경하고,

- 나. 한부모가족 및 모범납세자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타 공공운영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7. (위영란 의원 등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위영란 의원)

가. 제안사유

-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화성시 시민의 삶의 질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시 추가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이에 맞게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물품을 구입 시 마일리지 추가 적립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산 사회문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7. (조오순 의원 등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조오순 의원)

가. 제안사유

- 화성시 특산물인 수향미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수향미를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수향미가공산업의 육성 및 수향미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향미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과 이용의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과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소비자 또는 종사자에게 교육훈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우수 수향미가공품의 홍보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수향미가공품 유통센터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수향미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해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화성시 특산물인 수향미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수향미를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과 이용의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향미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2. 21.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

가. 제안사유

- 화성시 농특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의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수향미 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향미' 상표 사용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상표 사용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행사 참여자에게 시식 및 홍보물품 제공 가능 규정 신설(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화성시 농특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수향미 상표 사용 규정, 상표 사용료에 관한 규정, 홍보물품 제공 가능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임

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의 법적 제도 기틀을 만들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2. 8.

다. 상 정 일 자 :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2. 21. **수정가결**)

2. 제안요지설명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사유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및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특별회계를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제6항 삭제 및 제5조의2신설)
- 주민지원기금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특별회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의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기금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임

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라. 다만, 경과규정이 상위법 부칙에는 있으나, 개정된 조례에 없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조례 개정사항에 기존 시설과 신규시설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적용 시 혼란이 예상되는 바, 조례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원안	수정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10일 이전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신설)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